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변경하고,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사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(안 제2조)
- 나.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추가(안 제3조)
- 다. 통합방위협의회 및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(안 제2조 및 제6조)
- 라.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(안 제6조)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 (별첨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8622(2024. 11. 25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8622(2024. 11. 2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 [가족복지과-18360(2024. 11. 29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39(2025. 1. 21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208(2025. 2. 6.)호]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중 “통합방위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”를 “「통합방위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”을 “(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제2조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의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제4호 중 “작전과장”을 “정보작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2항제10

호”를 “제3항제10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평창지역 336방첩부대 136방첩대의 방첩관

(8)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통제구역 설정

2. 통합방위 대비책(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
3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
가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나. 지역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, 계몽 및 지원하기 위한 대책

다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
가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
5.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사항

6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7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4조의 제목 “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”을 “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· 운영) ① 「통합방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 · 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.

② 군 · 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작전상황에 따라 “병종사태”시에는 평창경찰서 내에, “을종사태” 이상의 사태선포시에는 육군제8087부대 1대대에 둘 수 있다.

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열영상감시장비(TOD)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자로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
8. ~ 10. (생략)

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
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
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
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
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
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
작전업무 담당과장(병종사태),
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
(을종사태 이상)

5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2항제10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(생 략)

<설설>

— — — — — 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평창지역 336방첩부대 136방 첩대의 방첩관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(4) _____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정보작전과
장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제3항 제10호

(7)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
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
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

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2. 통제구역 설정

3. 통합방위 대비 책

4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
 가.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
 나. 통합방위 작전·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·계몽 및 지원대책

5.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

 가. 지역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
 나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간의 유대강화

6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통제구역 설정

2. 통합방위 대비 책(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
3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
 가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 나. 지역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, 계몽 및 지원하기 위한 대책

 다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
가.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
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
항

나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에 참
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
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
· 관 · 군 간의 유대강화에
관한 사항

5.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
제3조에 따른 사항

6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
에 필요한 사항

7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
하는 안건

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
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
및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
음)

제6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
· 운영) ① 「통합방위법」(이
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제2항 제
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
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 ·
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.

② 군 · 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
위사태 구분없이 통합방위종합
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

제6조 (생략)

한다. 다만, 작전상황에 따라 “병종사태”시에는 평창경찰서 내에, “을종사태” 이상의 사태 선포시에는 육군제8087부대 1 대대에 둘 수 있다.

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,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열영상감시장비(TOD)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관 계 법령 발췌

□ 통합방위법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

-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 · 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 · 도지사가 된다. <개정 2013. 3. 22.>
- ②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 · 군 ·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 · 도 협의회와 시 · 군 · 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 · 도 협의회에 한한다. <개정 2024. 1. 16.>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”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2. 통합방위 대비 책
 3.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4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 대책
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용 및 지원 대책
 6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통합방위법 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

- ① 시 · 도지사 소속으로 시 · 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· 읍장 · 면장 · 동장 소속으로 시 · 군 · 구 · 읍 · 면 ·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- ② 시 · 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 · 군 · 구 · 읍 · 면 ·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각 통합방위 지원본부”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
 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
 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· 지원
 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 5.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(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- ① 시 · 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 · 군 · 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 2.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 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· 지검장 또는 검사
 5. 시 ·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 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 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 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 9.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
 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 11. 지방의회 의장
 12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 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 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“지역 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,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

2. 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

3. 취약지역 대비책

4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
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2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 · 관 · 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
제16조(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)

-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.
-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관련조문 : 안 제2조제8항

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
연락처	(033)-330-2019